

#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참여자 2차 추가 모집공고

경상북도와 (재)경북경제진흥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사업의 참여 시·군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6. 23.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공문접수\*

\* 시·군에서 빈 점포 및 입점자 선정 후 진흥원으로 공문 신청

##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054-995-9945)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공고 및 기업 개별통보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 사업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6개월 이상 된 빈 점포
○ 지원대상	: 시·군 지정 빈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수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 *시·군 지정 빈 점포에 입점하려는 신청자는 시·군으로 신청
○ 지원규모	: 4개소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80% 94백만원*(부가세 제외 및 자부담 20% 별도),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 선정평가에 따라 한도 금액 내 지원금액 책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7. 4. 30. * 사업화자금은 2027. 2. 28.까지 집행
○ 신청방식	: 해당 시·군에서 빈 점포 및 입점자 선정 후 진흥원으로 공문 신청 ※ 본 공고의 '신청내용' 참고 ※ 본 사업은 참여자 직접 신청방식이 아닌 <b>시·군에서 빈 점포 입점자를 선정하여 진흥원으로 신청하는 구조로</b>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b>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신청</b>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접수일시	: 2026. 6. 23.
○ 신청서접수마감일시	: 2026. 7. 7.

# 2.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지원내용

#### ① 지원대상

- 시·군 지정 빈집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사회적·마을기업, 우수 소상공인, 예술단체 등

※ 2개 이상의 주체가 결합한 '상생 협의체(컨소시엄)'형태로 신청가능하며 협의체 신청 시 주관 운영자(대표자) 1인을 반드시 지정 및 고유번호증 제출

#### < 지원제외 대상 >

- 도박, 유흥, 향락 등 본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업종(붙임1 참고)과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
- 미성년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2026년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또는 유사과제사업 참여자
- 이외 제출한 사업계획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제외

#### ② 활용분야

구분	사업내용	비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청년몰 공간, 테스트베드형 창업공간, 대학동아리·디자인학과 창작성 전시·판매 공간	
문화·체험·관광형 공간	지역특산물 체험 공간(전통주 시음, 공예품 등), 지역 예술인 창작성 전시·판매 공간	
복합 식문화 공간	지역특산물 활용 로컬 푸드 랩(쿠킹 클래스) 공간, 배달 전용·밀키트 개발 등 공유주방 공간	
특화전략형 공간 (팝업스토어 공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생산품 공동 판매장, 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판매 공간	
전통시장 전용공간	시장 온라인 주문·택배 거점, 농수산물 가공실, 로컬푸드 소포장 센터	

※ 상기 활용분야 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 단, 「전통시장법」 제17조(빈 집포의 활용 촉진) 및 「상생거래소 운영 지침(붙임2)」 참고

### ③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공급가액 기준 구분항목별 한도 내 최대 80% 지원)
  - 수행사업계획서 기반 개소당 최대 94백만 원 정도 지원되며, 개소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상이

구분	사업내용	지원한도	비고
상품화 개발비	• 상생거래소 관련 특화상품 시제품 제작, 패키징, 콘텐츠 개발 비용	최대 80% 20백만원	
기자재 임차료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비품 및 시설 임차료 (POS시스템, CC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품목 및 단가별 상이	월 최대 80% 2백만원	최대 7개월
공간 임차료	• 상생거래소 점포 임차료(임대차계약서 기준) * 보증금 지원 불가	월 최대 80% 1.5백만원	최대 7개월
공간브랜딩 및 인테리어비	• 점포운영 기반조성 인테리어 구축비	최대 80% 27.5백만원	
홍보 및 마케팅비	• 상생거래소 홍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등 홍보물 제작, 플리마켓 운영 등 홍보 마케팅 비용	최대 80% 22백만원	

- 홍보 지원 : 공동 판매 행사, 공동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지원
- 네트워킹 지원 : 사업 참여자 협업 촉진 및 선진지 견학 지원 등
  - ※ 선정된 참여자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네트워킹 및 공동 판매행사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사업비 집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④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사업 참여자가 사업 계획에 따른 과업 및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지급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 유의사항

- 사업 참여자는 **입점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의무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소의 가동 및 영업활동과 사업자등록을 휴폐업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

## 4. 신청내용

- 신청대상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군(담당부서)
- 신청기간 : 2026. 6. 23.(화) ~ 2026. 7. 7.(화)
- 신청방법 : 시·군에서 빈 점포 및 입점자 선정 후 진흥원으로 공문 신청
  -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시·군 담당부서(붙임2)를 경유하여 신청**
  - 신청절차

신청접수 모집	서류제출	시·군 선정	공문발송
시·군별 빈 점포 및 지원 대상자 모집	시·군별 모집현황에 따라 참여자 신청접수	시·군별 사업 참여자 선정	선정된 참여자 명단 및 서류 진흥원으로 제출
시·군	참여희망자 → 시·군	시·군	시·군 → 진흥원

※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참여자 선정 후 참여자 명단과 신청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진흥원으로 공문 발송

- 신청서류 ※ 신청서는 해당 시·군과 사업 참여자가 공동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	서류명	수량	비고
1	신청서	1부	서식집 [서식1]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집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서식집 [서식3]
4	이행각서	1부	서식집 [서식4]
5	지방비 투입 협약서	1부	서식집 [서식5]
6	추진주체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예비 창업자인 경우 생략가능, 협약체(컨소시엄)는 신청 시 구성원 전원 제출
7	추진주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9	2024, 2025 부가세 납부 증명원	1부	
10	[해당 시] 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	

※ 신청서류는 순서대로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 5.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 적격여부 검토 및 발표평가 후 적격자 선정

○ 평가절차

1차(서류심사)	⇒	현장실사	⇒	2차(발표평가)	⇒	최종선정
신청접수서류 자격요건 심사		입지 타당성 및 수행 계획서 부합여부 등 확인 * 대면 발표평가 자료 시 활용		전문성 사업역량 지원사업 이해도 등 평가 *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고득점 순에 따라 입점 후보자 선정
7. 8. ~ 7. 14.		7. 14. ~ 7. 20.		<b>7. 23.</b>		7. 23.

※ 평가일정은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시·군 및 사업 참여자 합동 발표평가(PT)로 진행

※ 발표자료는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로 진행하며,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발표평가 대상자에게 평가일정과 장소가 별도공지 예정이며 미참석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4개사 내외 선정되며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음. 다만, 60점 미만 시 선정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정량평가(2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 평가	매출성장률	○ '25년도 매출성장률 - ('25년도 매출액-'24년도 매출액)/'24년도 매출액*100 - 50% 이상(5), 20%이상~50%미만(3), 20%미만(1)	5	
	매출액	○ '25년도 매출액 - 1억원 이상(1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5), 5천만원 미만(1)	10	
	종업원 (근로자)수	○ 4대보험 가입 종업원 수(공고일 이후 발행) - 10인 이상(5), 5인 이상~10인미만(3), 5인 미만(1)	5	
<b>합 계</b>			<b>20</b>	

※ 예비창업자의 경우 정량지표 기본배점 각 매출액성장률(3), 매출액(5), 종업원 수(3) 부여

※ '24, '25년도 창업자의 경우 매출성장률 3점 부여

※ 컨소시엄 신청 시 정량평가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업자의 평균으로 채점  
(예시. 매출액=참여기업의 전체 매출액/컨소시엄 참여기업 수)

※ 기창업자와 예비창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점수 적용  
○ 정성평가(8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성 평가	사업 평가	사업목적의 적합성	○ 사업계획서의 사업목표 부합여부	5	
		사업계획 우수성	○ 사업계획 합리성 및 차별성	15	
		경영 노력도	○ 점포관리 역량보유, 홍보전략 수립여부 등 ○ 계획의 실현가능성	15	
	신청자 역량 평가	신청자 역량	○ 경영능력 보유여부 ○ 사업수행 이행능력 보유여부 등	15	
		전통시장 융합 가능성	○ 사업계획 융합 가능성 ○ 사업계획 이행에 따른 시장 활성화 가능성	15	
		성장 가능성	○ 추진주체의 사업역량과 시장 활성화 가능성	15	
<b>합 계</b>			<b>80</b>		

○ 가점(최대 5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가점) 각 항목 중 해당요건 충족 시 최대 5점 부여	○ 사군비 매칭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많은 경우 (기준금액 : 93,300천원) ○ 정책우대 대상자(기업) 여부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 대표자가 다자녀 가정인 기업의 경우 ※ 1개 요건 충족 시 5점 부여	5	

※ (청년, 다자녀 기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1987. 1. 1.

□ 선정결과 : 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업체별 개별 통보

## 6. 기타사항 및 문의

---

- 본 공고에 작성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공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본 공고 또는 부속서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정 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포기, 사업 지침 미준수, 사업 미이행할 경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2년간 배제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http://www.gepa.kr))에 공고 예정
- (문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 054-995-9945, (E-mail) [gepa02@gepa.kr](mailto:gepa02@gepa.kr)

- 붙임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지원 제외 대상 업종 1부.  
2.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지침 1부.  
3. 시·군 제출처 1부.  
4. 신청서류 양식 1부.

# 붙임 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중분류	표준산업분류	업종
기타제품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금융업	6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 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중분류	표준산업분류	업종
전문 서비스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수의업	731	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 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 2의3.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集荷) 및 배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하 및 배송을 말한다) 장소
2. 창업 실습 공간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재배실과 그 농작물의 판매장
4. 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5. 그 밖에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

**붙임 3****시·군 사업신청서 제출 문의**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054-270-2433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79-6245	
김천시	경제정책과	054-420-6274	
안동시	지역경제과	054-840-5304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47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231	
상주시	투자경제과	054-537-7407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487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0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456	
청송군	문화경제과	054-870-6232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322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3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054-370-2264	
고령군	지역경제실	054-950-6562	
성주군	경제교통과	054-930-670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	
예천군	지역경제과	054-650-6091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52	
울진군	경제교통과	054-789-6771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사업 수행계획서

2026. . .

지방자치단체	단체명	시장·군수
	대표자	(직인)
참여자 1	기업명	
	대표자	(직인)
참여자 2	기업명	
	대표자	(직인)

**\* 협의체 구성 시 하단에 줄 추가하여 작성, 참여하는 모든 단체명과 직인 필수**

# 사업계획 요약서

구분	예비창업자/우수소상공인/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표기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협의체	
기업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예정기업명 작성 * 협의체 구성 시 구성원 전체 기재	대표자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설명				
시 장 명	(지역명)시장명	총 상가규모		
활용분야				
활용내용				
예상 소요예산	<b>도비(A)</b>	<b>시군비(B)</b>	<b>자부담(C)</b>	<b>합계(A+B+C)</b>
	백만원 (00%)	백만원 (00%)	백만원 (00%)	백만원 (00%)
위치사진				
목표 및 기대효과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 사업계획 대비 달성 목표 등 기술(사업추진 정도, 사업자등록 등)</li> <li>- (정량) 구체적인 수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출, 고용 등 사업성과,</li> <li>(2) 역량강화 목표(교육 수료 횟수 또는 시간),</li> <li>(3) 지역홍보 횟수(사업이아템 관련 또는 자발적 홍보 등)</li> <li>(4) 지역 커뮤니티 또는 지역사회 기여 가능한 행사 참여 횟수</li> </ul> </li> </ul>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p>추진 개요</p>	<p>○ 추진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p>추진 일정</p>	<p>○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data-bbox="370 495 1359 759"> <thead> <tr> <th data-bbox="370 495 521 539">일정</th> <th data-bbox="521 495 1179 539">추진내용</th> <th data-bbox="1179 495 1359 539">비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일정	추진내용	비고															
일정	추진내용	비고																	

# 사업계획서

## 1. 사업동기 및 목적

(비전 및 미션, 사업의 목적 및 동기, 배경, 사업의지, 아이템 선정 동기, 구성원 소개 등)

## 2. 개요

(사업소개, 가치창출 등 주요 아이디어내용, 공간 활용 소개)

## 3. 목표

- (정성) 사업계획 대비 달성 목표 등 기술(사업추진 정도, 사업자등록 등)
- (정량) 구체적인 수치 제시
  - (1) 매출, 고용 등 사업성과
  - (2) 역량강화 목표(교육 수료 횟수 또는 시간),
  - (3) 지역홍보 횟수(사업아이템 관련 또는 자발적 홍보 등)
  - (4) 지역 커뮤니티 또는 지역사회 기여 가능한 행사 참여 횟수

## 4.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공간구성 세부내용

홍보방안

(공간구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홍보 등 기재)

현장사진

현장사진1	현장사진2

활용계획

활용계획1	활용계획2

※ 공간 인테리어 및 활용에 대한 예시 사진과 공간 도면 첨부(필수)

### 5. 참여인력 현황

본사업 참여인력 작성 및 협의체 구성 시 협의체 구성원 전체 작성

연번	성명	직위	주요업무	주요경력 (3개 이내 기재)
1				
2				
3				
4				
5				

### 6. 기대효과(지역사회 기여도 등)

(아이디어의 효용성, 전통시장과의 융합 및 시너지효과, 실현 가능성 등 기재)

\*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효과 위주 기재

### 7. 예상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비율 (%)	산출근거	비고
0000	0000	0000	-		
	소계				
0000	0000				
	소계				
총계			100%		

< (참고) 총 예산표 작성예시 >

구 분		소요 예산	비율 (%)	산출근거	비고
인프라 구축비	공간 리모델링	45	31.0%	-인테리어 리모델링 견적가격	
	소 계		%		
사업비		70	4.7%	-네트워킹 운영비00천원×1회	
	소 계		%		
시설 운영비	임차료	140	9.3%	-임차료 00천원×0개월	
	시설임차료	70	4.7%	-시설임차료 00천원×0개월	
	소 계		%		
총 계			100.0%		

\* 산출근거 상세 작성 요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지원하는 마케팅 및 기업지원사업 제반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 · 이용목적 : 평가·선정, 정책수립, 통계작성, 교육일정 및 진행사항 안내, 만족도 조사, 창업현황조사 등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자격 및 면허
- 보유 및 이용기간 : 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진흥원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북도 및 도 내 시·군, 진흥원의 다른 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자> 성 명 : \_\_\_\_\_ (서명)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 이행각서

○ 기업명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보조금 지원 시기

- 공사완료 후 자부담으로 공사업체에 선 정산, 이후 보조금 신청에 따라 지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업 운영

2026. . .

기업명: , 대표 (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 지방비 출연·보조 약속서

**□ 사업 개요**

사업명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사업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참여기업		대표	
사업내용	○ ○		

**□ 사업비 출연·보조 내역**

구 분	납입금액(백만원)				비 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총계	
현금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도비에 대한 시·군비를 상기와 같이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군수    ○ ○ ○ (직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